

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. 11. 11 선고 2020가단129948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서울센트럴

담당변호사 이창용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현

담당변호사 김선희, 임은지

변 론 종 결 2021. 9. 16.

판 결 선 고 2021. 11. 11.

주 문

1.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와 C 사이의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. 2. 22. 체결된 대물변제계약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42,346,00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2013. 2. 6.경부터 C에게 총 30,716,000원을 빌려주고 C로부터 2013. 11. 30.까지 위 대여금을 변제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보관증을 작성교부받았고, 2019. 10. 25. C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20331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여 2020. 5. 13. 위 법원으로부터 ‘C는 원고에게 30,716,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’는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받았으며, 위 판결은 2020. 6. 26. 확정되었다.

나. C는 2016. 2. 26.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 한다)에 관하여 2016. 2. 22.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2, 7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주장과 판단

가. 원고 주장의 요지

C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대물변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,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바, 이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의 이익에 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. 원고는 C에 대한 채권자로서 위 대물변제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청구취지와 같은 가액배상을 구한다.

나. 본안 전 판단

1) 민법 제406조 제2항에 의하면,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, 법률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, 위 기간은 제소기간이라고 할 것이므로 법원은 위 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그 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채권자취소의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(대법원 1996. 5. 14. 선고 95다50875 판결 참조).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‘취소원인을 안 날’이라 함은

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,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,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,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,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할 것이다(대법원 2011. 12. 22. 선고 2010다11408 판결 참조).

2)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3 내지 9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),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수원지방법원에 대한 문서송부탁결과에 변론 전체에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① C는 2016. 8. 9. 수원지방법원 2016하단3787, 2016하면3787호(이하 'C의 파산면책 신청사건'이라 한다)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고, 2016. 10. 10.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다.

② 원고는 2017. 7. 14. C의 파산면책 신청사건 법원에 '원고와 C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오던 사이로 원고는 C에 대하여 7,5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, C가 포천시 D 대 450㎡ 및 위 토지 지상 단층주택, D 대 514㎡(이하 '포천시 부동산'이라 한다), 인천 강화군 E 임야 1,653㎡ 및 F 잡종지 747㎡(이하 '강화군 부동산'이라 한다) 및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명의를 변경하여 재산을 도피시켰다'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.

③ 그 후 원고는 2017. 9. 13. C 및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단243376호로 '대여금 30,716,000원 등의 반환과 C와 피고 사이의 포천시 부동산에 관한 2015. 9. 4.자 매매계약의 취소(사해행위), 강화군 부동산에 관한 2015. 9. 8.자 매매계약의 취소(사해행위) 및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(원상회복)'을 구하는 소(이하 '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'이라 한다)를 제기하였다.

④ 원고는 2017. 12. 12. C의 파산면책 신청사건 법원에 'C는 2015. 9. 초순경 포천시 부동산 및 강화군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에게 명의변경을 하여 모든 재산을 처분해 버리고, 원고에 대한 차용금 변제를 하지 않고 있으니, 파산관재인에게 피고를 상대로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부인권을 행사할 수

있도록 명령을 내려달라’는 내용의 부인권 행사 요청서를 제출하였다.

⑤ 원고는 2018. 1. 26.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취하하였고, 2018. 6. 11. C의 파산면책 신청사건 법원에 ‘원고는 2017. 12. 12. 부인권행사 요청을 한 후 파산관재인에게 여러 차례 요청하였고, 파산관재인이 검토하겠다고 미루는 과정에서 피고가 다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. 파산관재인이 바로 부인권행사의 소를 제기하였으면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, 또한 원고는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사해행위 취소소송도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니, 경매를 넣고 남는 것이 없더라도 부인권행사를 하여 C에게 원상복귀를 해주기 바란다’는 내용의 부인권 재차 요청서를 제출하였다.

⑥ C의 파산면책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9. 8. 19. ‘C가 2015. 9. 7. 및 2015. 9. 9. 포천시 부동산 및 강화군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을 받지 않고 자녀인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것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, 제65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‘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’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면책불허가 및 파산절차 폐지결정이 내려졌다.

3)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원고는 C의 파산면책 신청사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2017. 7. 14. 무렵에는 C의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행위와 파산선고로 인한 C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고 있었고, 늦어도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한 2017. 9. 13. 무렵에는 C의 이 사건 부동산 처분행위가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고 만족을 해할 수 있음과 C의 사해의사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며,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김유정

부동산의 표시

1.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제1층 호

2. 1동의 건물의 표시

경기도 안양시 동안구

[도로명주소]

경기도 안양시 동안구

벽돌조 슬래브지붕 3층 다세대주택

1층 81.72㎡

2층 81.72㎡

3층 81.72㎡

지층 81.72㎡

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

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대 268.1㎡

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

제1층 호 벽돌조 36.06㎡

대지권의 표시

소유권대지권 561분의 70.125 -끝-

